동탄2신도시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판매시설 분양광고

■ 본 판매시설 분양광고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판매시설은 원활한 청약을 위하여 "동탄2신도시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에서만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 청약 신청한 판매시설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 관련 안내사항** : 본 판매시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1항에 의거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 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대상,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화성시청 건축정책과 - 435호(2024.04.17)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

■ 본 건축물은 화성시청 건축과 – 35379호(2021.05.18.)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허가번호 : 2020-건축과-신축허가-958호]

■ 공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동 725-9,10,11번지 (동탄2 택지개발지구 일상10-1,2,3BL)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5,632.5000㎡ (오피스텔 대지지분 : 5,177.5505㎡, 판매시설 대지지분 : 454.9495㎡)
- 건축물 연면적 : 비주거(판매시설) 6,523.6382㎡ (오피스텔 : 65,598.7960㎡, 총 연면적 72,122.4342㎡)
- 공급규모 : 총 76실 (판매시설 76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주차대수 : 총 468대 (총 468대 중 판매시설 45대 / 법정 기준 판매시설 39대 시설면적 100㎡당 1대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재**

(단위 : ㎡,원)

층별	호실	면 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계약금 10%	잔금(90%)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 면적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 시	입점 시
지상1층	101	36.1200	13.7795	38.4953	88.3948	6.1645	323,526,000	251,340,000	25,134,000	600,000,000	60,000,000	540,000,000
	102	34.4000	13.1233	36.6621	84.1854	5.8709	293,438,082	227,965,380	22,796,538	544,200,000	54,420,000	489,780,000
	103	34.4000	13.1233	36.6621	84.1854	5.8709	293,438,082	227,965,380	22,796,538	544,200,000	54,420,000	489,780,000
	104	36.1200	13.7795	38.4953	88.3948	6.1645	308,104,594	239,359,460	23,935,946	571,400,000	57,140,000	514,260,000
	105	30.6150	11.6794	32.6283	74.9227	5.2250	261,193,324	202,915,160	20,291,516	484,400,000	48,440,000	435,960,000
	106	33.7550	12.8772	35.9747	82.6069	5.7609	302,335,047	234,877,230	23,487,723	560,700,000	56,070,000	504,630,000
	107	31.9200	12.1772	34.0191	78.1163	5.4477	245,070,945	190,390,050	19,039,005	454,500,000	45,450,000	409,050,000
	108	34.4000	13.1233	36.6621	84.1854	5.8709	264,105,058	205,177,220	20,517,722	489,800,000	48,980,000	440,820,000
	109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250,894,413	194,914,170	19,491,417	465,300,000	46,530,000	418,770,000
	110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250,894,413	194,914,170	19,491,417	465,300,000	46,530,000	418,770,000
	111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250,894,413	194,914,170	19,491,417	465,300,000	46,530,000	418,770,000

	112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250,894,413	194,914,170	19,491,417	465,300,000	46,530,000	418,770,000
	113	39.8424	15.1995	42.4625	97.5044	6.7998	305,893,833	237,641,970	23,764,197	567,300,000	56,730,000	510,570,000
	114	24.0000	9.1558	25.5782	58.7340	4.0960	194,493,047	151,097,230	15,109,723	360,700,000	36,070,000	324,630,000
	115	24.2800	9.2626	25.8765	59.4191	4.1438	196,757,729	152,856,610	15,285,661	364,900,000	36,490,000	328,410,000
	116	35.7200	13.6269	38.0688	87.4157	6.0962	289,501,849	224,907,410	22,490,741	536,900,000	53,690,000	483,210,000
	117	34.9600	13.3369	37.2590	85.5559	5.9665	283,300,934	220,090,060	22,009,006	525,400,000	52,540,000	472,860,000
	118	31.2000	11.9025	33.2516	76.3541	5.3248	252,835,569	196,422,210	19,642,221	468,900,000	46,890,000	422,010,000
	119	28.0000	10.6818	29.8412	68.5230	4.7787	238,870,030	185,572,700	18,557,270	443,000,000	44,300,000	398,700,000
	120	30.3600	11.5821	32.3564	74.2985	5.1814	284,864,643	221,304,870	22,130,487	528,300,000	52,830,000	475,470,000
	121	25.1600	9.5983	26.8143	61.5726	4.2940	225,389,780	175,100,200	17,510,020	418,000,000	41,800,000	376,200,000
	122	25.1600	9.5983	26.8143	61.5726	4.2940	225,389,780	175,100,200	17,510,020	418,000,000	41,800,000	376,200,000
	123	26.6400	10.1629	28.3917	65.1946	4.5466	238,600,425	185,363,250	18,536,325	442,500,000	44,250,000	398,250,000
	124	23.6800	9.0337	25.2370	57.9507	4.0414	212,125,214	164,795,260	16,479,526	393,400,000	39,340,000	354,060,000
	125	29.6000	11.2921	31.5466	72.4387	5.0517	265,129,557	205,973,130	20,597,313	491,700,000	49,170,000	442,530,000
	126	26.6400	10.1629	28.3917	65.1946	4.5466	238,600,425	185,363,250	18,536,325	442,500,000	44,250,000	398,250,000
	127	25.9000	9.8806	27.6030	63.3836	4.4203	231,968,142	180,210,780	18,021,078	430,200,000	43,020,000	387,180,000
	128	28.8600	11.0098	30.7579	70.6277	4.9254	270,791,262	210,371,580	21,037,158	502,200,000	50,220,000	451,980,000
	129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276,291,204	214,644,360	21,464,436	512,400,000	51,240,000	461,160,000
	130	33.9700	12.9593	36.2038	83.1331	5.7976	275,320,626	213,890,340	21,389,034	510,600,000	51,060,000	459,540,000
	131	30.8100	11.7537	32.8360	75.3997	5.2582	249,708,151	193,992,590	19,399,259	463,100,000	46,310,000	416,790,000
	132	33.9700	12.9593	36.2038	83.1331	5.7976	275,320,626	213,890,340	21,389,034	510,600,000	51,060,000	459,540,000
	133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262,487,428	203,920,520	20,392,052	486,800,000	48,680,000	438,120,000
	134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262,487,428	203,920,520	20,392,052	486,800,000	48,680,000	438,120,000
	135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262,487,428	203,920,520	20,392,052	486,800,000	48,680,000	438,120,000
	136	33.2500	12.6846	35.4366	81.3712	5.6747	311,986,906	242,375,540	24,237,554	578,600,000	57,860,000	520,740,000
	137	32.7290	12.4858	34.8813	80.0961	5.5858	279,202,938	216,906,420	21,690,642	517,800,000	51,780,000	466,020,000
	138	33.7692	12.8827	35.9898	82.6417	5.7633	288,099,903	223,818,270	22,381,827	534,300,000	53,430,000	480,870,000
	139	36.5820	13.9557	38.9876	89.5253	6.2433	312,094,748	242,459,320	24,245,932	578,800,000	57,880,000	520,920,000
	140	36.5820	13.9557	38.9876	89.5253	6.2433	312,094,748	242,459,320	24,245,932	578,800,000	57,880,000	520,920,000
	141	38.1900	14.5692	40.7013	93.4605	6.5178	325,790,682	253,099,380	25,309,938	604,200,000	60,420,000	543,780,000
	142	36.9840	14.1091	39.4162	90.5093	6.3120	331,290,624	257,372,160	25,737,216	614,400,000	61,440,000	552,960,000
지상2층	201	36.1200	13.7795	38.4953	88.3948	6.1645	129,302,558	100,452,220	10,045,222	239,800,000	23,980,000	215,820,000
	202	34.4000	13.1233	36.6621	84.1854	5.8709	117,278,175	91,110,750	9,111,075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203	34.4000	13.1233	36.6621	84.1854	5.8709	117,278,175	91,110,750	9,111,075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204	34.4000	13.1233	36.6621	84.1854	5.8709	117,278,175	91,110,750	9,111,075	217,500,000	21,750,000	195,750,000
	205	35.2600	13.4514	37.5788	86.2902	6.0177	120,189,909	93,372,810	9,337,281	222,900,000	22,290,000	200,610,000
	206	36.9800	14.1076	39.4117	90.4993	6.3113	132,376,055	102,839,950	10,283,995	245,500,000	24,550,000	220,950,000
	207	49.8800	19.0288	53.1602	122.0690	8.5129	153,027,798	118,883,820	11,888,382	283,800,000	28,380,000	255,420,000
	208	34.4000	13.1233	36.6621	84.1854	5.8709	105,523,397	81,978,730	8,197,873	195,700,000	19,570,000	176,130,000
	209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100,293,060	77,915,400	7,791,540	186,000,000	18,600,000	167,400,000
	210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100,293,060	77,915,400	7,791,540	186,000,000	18,600,000	167,400,000
	211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100,293,060	77,915,400	7,791,540	186,000,000	18,600,000	167,400,000
	212	32.6800	12.4671	34.8290	79.9761	5.5774	100,293,060	77,915,400	7,791,540	186,000,000	18,600,000	167,400,000
	213	39.8424	15.1995	42.4625	97.5044	6.7998	122,238,907	94,964,630	9,496,463	226,700,000	22,670,000	204,030,000
	214	48.2800	18.4184	51.4549	118.1533	8.2398	156,370,900	121,481,000	12,148,100	290,000,000	29,000,000	261,000,000
	215	35.7200	13.6269	38.0688	87.4157	6.0962	115,660,545	89,854,050	8,985,405	214,500,000	21,450,000	193,050,000
	216	34.9600	13.3369	37.2590	85.5559	5.9665	113,234,100	87,969,000	8,796,900	210,000,000	21,000,000	189,000,000
	217	31.2000	11.9025	33.2516	76.3541	5.3248	101,047,954	78,501,860	7,850,186	187,400,000	18,740,000	168,660,000
	218	31.2000	11.9025	33.2516	76.3541	5.3248	101,047,954	78,501,860	7,850,186	187,400,000	18,740,000	168,660,000

	219	41.2800	15.7480	43.9945	101.0225	7.0451	154,807,191	120,266,190	12,026,619	287,100,000	28,710,000	258,390,000
	220	50.3200	19.1967	53.6291	123.1458	8.5880	180,096,140	139,912,600	13,991,260	334,000,000	33,400,000	300,600,000
	221	53.2800	20.3259	56.7838	130.3897	9.0932	190,718,577	148,164,930	14,816,493	353,700,000	35,370,000	318,330,000
	222	53.2800	20.3259	56.7838	130.3897	9.0932	190,718,577	148,164,930	14,816,493	353,700,000	35,370,000	318,330,000
	223	54.7600	20.8947	58.3819	134.0366	9.3496	196,002,835	152,270,150	15,227,015	363,500,000	36,350,000	327,150,000
	224	33.9700	12.9593	36.2038	83.1331	5.7976	115,822,308	89,979,720	8,997,972	214,800,000	21,480,000	193,320,000
	225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104,876,345	81,476,050	8,147,605	194,500,000	19,450,000	175,050,000
	226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104,876,345	81,476,050	8,147,605	194,500,000	19,450,000	175,050,000
	227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104,876,345	81,476,050	8,147,605	194,500,000	19,450,000	175,050,000
	228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104,876,345	81,476,050	8,147,605	194,500,000	19,450,000	175,050,000
	229	32.3900	12.3565	34.5199	79.2664	5.5279	104,876,345	81,476,050	8,147,605	194,500,000	19,450,000	175,050,000
	230	30.8100	11.7537	32.8360	75.3997	5.2582	99,753,850	77,496,500	7,749,650	185,000,000	18,500,000	166,500,000
	231	46.5300	17.7508	49.5899	113.8707	7.9412	174,488,356	135,556,040	13,555,604	323,600,000	32,360,000	291,240,000
	232	51.4250	19.6182	54.8067	125.8499	8.7766	175,297,171	136,184,390	13,618,439	325,100,000	32,510,000	292,590,000
	233	50.0500	19.0937	53.3413	122.4850	8.5419	170,606,044	132,539,960	13,253,996	316,400,000	31,640,000	284,760,000
	234	51.4250	19.6182	54.8067	125.8499	8.7766	184,086,294	143,012,460	14,301,246	341,400,000	34,140,000	307,260,000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6층 ~ 지하1층 :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판매시설 주차장은 지하1층만 해당) / 지하1층 ~ 지상1층 : 부대시설(관리사무소,MDF,경비실 등) / 지상1층 ~ 지상2층 : 판매시설 / 지상3층 ~ 지상48층 : 오피스텔

구분	용도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판매시설
지상2층	판매시설

■ 내진설계 등급 : I 등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2 의거), 본 판매시설은「건축법」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을 확보함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g	S_4	1.2	C	1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5호의 3 가목에 의거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여부 : 여 (일반상업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부

■ 분양대금의 관리자 : 코리아신탁(주)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건축주 간의 관계 :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7호 의거

■ **판매시설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은 복합주거단지로서 동일 블록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층, 호실별 위치 등에 따라 다르오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판매시설의 전용면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벽체 중심선 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 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잔금은 건축주가 지정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또는 실 입점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하여야 함.
- 입점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잔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는 입점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실입점(키 불출일 또는 입점증 발급일 중 빠른날)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측량)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시설별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회산방법 : 면적(㎡) x 0.3025 또는 면적(㎡) ÷ 3.3058)
- "을"은 사업현장, 견본주택, 설계도 등을 통하여 호실 내 기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갑"은 상가 내 기둥이 있는 호실에 대하여 "을"에게 이를 설명, 고지하며, 추후 "을"은 위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 (영업 업종은 관련 법규 및 지구단위지침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함.)**

용도	사용용도	
비주거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 허용용도로「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이 가능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및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관계 법령에 따라 점포별 지정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인·허가 제한 사항(영업 인·허가에 따른 면적 제한기준 및 각종 전기, 설비기준 등,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 등)은 청약 및 분양 계약 전에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영업허가, 신고 등에 수반되는 비용(전기, 수도 증설, 원인자부담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판매시설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청약신청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일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며, 위 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광고일(2024.04.1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대리 신청 계약의 경우, 투기성 청약 접수를 제한하기 위해 청약 신청 위임 건수를 1인당 1건으로 제한합니다.
- 경쟁 발생 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 신청	호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4.04.26.(금) (10:00~12:00)	2024.04.26.(금) (12:00~14:00)	2024.04.26.(금) (14:00~18:00)	-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각 호별로 접수 및 경쟁 발생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 문의는 대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답 및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 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장 소	동탄2신도시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견본주택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기재

■ **청약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내용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건축주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도장(서명도 가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본인 확인) - 재외동포 서류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의 인감도장 등 - 청약신청금 납부영수증(무통장 입금증),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 1부 (청약신청인 명의) ※ 환불 계좌로 증권・대출・펀드・적금・연금 계좌는 접수 불가, 현금 수납 절대 불가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자로 간주(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 추가 서류 구비 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견본주택 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판매시설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공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법 인	- 청약신청서(건축주 견본주택에 비치),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신청금(이체증), 청약신청금 환불계좌 통장사본(청약신청법인 명의)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 동탄2신도시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판매시설 청약 신청용)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모든 판매시설 공통	**5,000,000원**	**무통장 입금 (동·호수 계약자성명 기재)**	**전북은행**	**1013-01-4000755**	**코리아신탁(주)(근생 분양수입)**

※ 청약 신청금은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금 납부영수증(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유의사항**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공급신청은 받지 않으며 견본주택에서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금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는 확인 내용에 대한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 당첨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일시 : **2024.04.26.(금) 12:00부터** (※ 각 호별로 추첨 진행되며 경쟁 발생 시 추첨 시간은 현장에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추첨 방법 : 경쟁 발생 시 참관인 입회하에 사업 주체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을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영상 촬영 후 견본주택에서 보관합니다.
- 당첨자 발표 : **2024.04.26.(금) 14:00까지** (※ 추첨 순서에 따라 발표 시간이 상이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확인은 사업 주체 견본주택에서 현장 통보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 주체에서 수의 분양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계약자의 청약신청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청약신청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며,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며, 위 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청약신청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함으로써 발행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 예정 일시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주 영업일 이내로 지급 (자금 인출 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대상 : 청약자 중 낙첨자
- 환불방법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청약자 본인(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 처리합니다.

(환불계좌 오류, 환불서류 미비 등 송금 불능 사유 발생 시 환불 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 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불 불가에 대한 사항은 건축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될 수 있으며, 낙첨자의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 신청 구비서류
  - 청약환불 신청서(견본주택 구비) - 청약신청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인감도장
  - 제3자 대리 환불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 제출 생략)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4년 04월 26일(금)	14:00 ~ 18:00	동탄2신도시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 견본주택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전북은행	1013-01-4000755	코리아신탁(주)(근생 분양수입)

- 계약금의 경우, 2회차에 나누어 납부를 진행한다. (계약일 : 청약신청금을 납부 / 계약 7일 후 : 계약금 - 청약신청금)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건축주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① 일정 변동시 안내를 할 예정이며, ② 안내를 받을 연락처/주소를 계약 체결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③ 번호변경/이사 등의 이유로 수신처 변동시 반드시 건축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③의 사항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축주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건축주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 판매시설A동 101호 계약시 "A0101김대산")

- 사업 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전자 등기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 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 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판매시설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납부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 전자수입인지 사본 (우체국, 은행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사본 제출)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판매시설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무통장 입금확인증 • 전자수입인지 사본 (우체국, 은행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사본 제출)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판매시설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축주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단,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명기되어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제외)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청약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청약신청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며,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계약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며, 위 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 사업지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있는 계약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하고, 사업 주체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수신용 E-MAIL주소를「 dbindustry@db-dvp.co.kr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 통보 및 통보 지연, 지정된 E-MAIL주소 외 다른 수단을 통한 제출,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 신고 및 누락 등에 따른 부가세 미환급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통보 및 이메일 주소 발송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자가 위 서류를 제출한 날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 주체는 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등 관련 업무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자가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청약신청금(계약 체결 이후라면 계약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자가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청약신청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사업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건축물 내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기둥 위치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의 입점 시기와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입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V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관련 안내 사항

- 본 판매시설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동 시행령 제8조 1항 제14호의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판매시설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이후 시행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지정된 일자에 전매 진행이 가능하며, 분양금 미납, 연체료 미납, 대출 미승계 시에는 전매는 불가합니다.

■ 준공 및 입점예정일

- 착공일 : **2021년 04월 16일**
- 준공예정일 : **2024년 09월 말 예정**
- 입점예정일 : **준공 이후**
- 준공 및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 지연이 발생하는 점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제10호에 따른 기재)
-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점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셔야 입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점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 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VI 기타 유의사항

■ 공동 유의사항

- 본 건물 취득 시에는 4.6% 취득세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건축허가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과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이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유합니다.
- 입점 시 입점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점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점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판매시설의 공사 중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멸종위기종 서식지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한 입점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입점 지연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본 건축물 배치도, 조경 컷, 단위 평면은 건축허가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분명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형, CG 상의 조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제 시공 시 조경(수공간, 휴게공간 등) 및 식재 계획이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문, TV, 인터넷 등 매체상의 기사, 자료, 문구, 이미지 등은 실제 시공 및 분양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

권 등기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고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입점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문서로써 [주민등록등본 포함] 건축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 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판매시설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매시설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호실별 공급금액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시설로서 매각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점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판매시설의 입점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일조권,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판매시설의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각 호의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에게 통보 후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연기 발생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실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본 판매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용도 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의 인접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 바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입면디자인, 색채, 마감재 등은 추후 설계변경 및 디자인개선 등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외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의 입면디자인, 색채, 마감재 등은 추후 설계변경 및 디자인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본 건축물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 및 본 건축물계획에 의해 본 건축물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본 건축물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어, 상행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내 입점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흙막이 설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법 및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에게 통보 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외관디자인, 조경, 동 현관, 공용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점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호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의 각 호실의 층고/천정고, 창호(출입문)의 크기 및 위치는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호실별 층고의 상이 및 창호의 위치 변경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내 내부 가로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및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설치할 경우 과태료, 철거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관련 법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판매시설 내력벽 및 기둥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전기, 설비의 공사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동·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크기, 구성, 형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입점 후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입점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점 시 본 건축물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협의 또는 설계변경, 경관 및 색채계획 등 포함)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점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이후 본 건축물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경 시설물, 경관조명 등 본 건축물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본 건축물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의 모든 입점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점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 지도전단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및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인승, 용량 등은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이 가구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 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단, 원자재 수급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공 상의 이유로 바닥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별 출입문은 출입 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공급안내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건축물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업주체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주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품질 이상의 타사 제품 등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본 건축물 및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점자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천정고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및 지하주차장 차로의 층고, 천정고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차량 진입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경사로의 출입구 높이는 약 3.5m로 설치됩니다.
  - 지하1층 차로 천정고는 쓰레기수거차량 동선계획 등의 이유로 구간별로 상이하며 차로 최저 천정고는 3.5m이나, 지하주차장 천정 설비배관 및 바닥마감 두께에 따라 천정고는 일부 구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지하6층 차로 천정고는 2.3m이며, 천정 설비배관 및 바닥마감 두께에 따라 천정고는 일부구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의 지하1층 주차장에 쓰레기(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등이 설치되어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DF실, 방재실, 관리사무소, 전기실, 소화설비 및 기계실, 펌프실 관련 실 등은 공유시설로써 공동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유시설에 대하여 추후 별도로 분리 또는 병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에 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본 건축물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조감도, 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건축주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건축주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 시,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 및 견본주택 인근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건축주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건축주의 브랜드 등은 향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대지경계선 밖은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 패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건축주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본 건축물 모형 및 단위평면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평면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테이블, 의자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점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 색상,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불가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와 접하는 공간은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도면,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본 건축물 내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본 건축물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내/외부의 색채 및 마감재 계획과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주의 매뉴얼이나 디자인 개선 및 해당 관청 변경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판매시설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점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점자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점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분전반,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여부 및 제품사양,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옥상은 냉각탑, 환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판매시설 최상층 및 인접 호실에는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동의 피난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옥상에는 냉각탑, 환기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가림막(구조물)이 설치되어 조망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천장에는 냉난방을 위한 천정형 FCU 및 급배기를 위한 디퓨저가 설치되며, 변경, 철거 등 훼손 시 원상회복은 입점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냉, 난방은 공용의 냉동기, 냉각탑 및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천정형 FCU로 공급되므로 냉, 난방 동시공급은 불가하고, 냉, 난방 공급기간은 관리주체와 입점자간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판매시설 천장에는 급배기를 위한 디퓨져가 설치되며, 변경, 철거 등 훼손 시 원상복구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에는 주방용 급배기를 위한 덕트 메인배관까지만 설치되며, 점포 내 환기시설은 입점자 설치분입니다.
- 판매시설 옥상에는 공용의 덕트로 연결된 주방배기탈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점포에는 주방배기덕트가 설치되나, 점포 내의 연결공사는 입점자의 부담 및 책임입니다.
- 대규모 식음시설이나 냄새가 많은 식음시설 영업의 경우에는 입점자가 별도의 탈취설비를 설치하고 냄새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식음시설 입점자가 별도의 탈취설비 미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그 조치에 따른 비용은 입점자 부담입니다. 특히 판매시설 주방 외 홀에서 화로구이와 같은 냄새 유발 식음시설 영업 시 배기설비 및 탈취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주방배기의 필요에 따른 추가 설치 시에는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해야하며, 또한 사전에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 주방 내 급기공사 필요 시 위치확인 후 입점자 부담으로 연결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된 설비배관(급수, 급탕, 배수, 가스, 냉난방, 환기, 배기 등) 및 장비의 위치 및 높이는 정해져 있으며 위치 이동시에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지역 난방 시스템에 의해 비 냉난방 시에도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내부 바닥 적용마감은 시멘트몰탈(최종마감없음)이며, 최종마감 및 도어에 따라 두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천정 적용마감은 없으며, 벽체는 도장마감으로 진행됩니다.
- 입점예정자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시설 호실 구분을 위한 비내력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각 실의 경계 부분에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를 시공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후 호실 사인을 함께 표시한다.
- 판매시설 내 천장 및 인접 PD에는 설비(급수,급탕,오배수 등), 도시가스, 냉난방기 배관, 소방배관 등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 내 천장공간 또는 인접세대의 PD(pipe duct)공간에 공용설비(소방설비, 도시가스,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점자의 무단철거 및 훼손은 불가능합니다.
- 판매시설 각 점포의 환기설비는 점포별 동일한 조건으로 환기설비를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른 추가설치 시에는 계약 전 설치공간을 확인 및 오피스텔 입점인과 다른 판매시설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설치하여 발생한 손해, 민원처리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시설의 가스설비는 도시가스(밸브&캡마감)가 각 점포별로 공급되며, 필요에 의한 추가 설치 시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모든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 내에서의 식음시설 영업 시 유지(기름)나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막힘현상 방지 및 악취 차단을 위해 주방용 배수 그리스트랩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및 입점자 과실로 인한 배수관 막힘 등의 하자처리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방(조리공간) 사용 시 추가 소화설비(K급 소화기 등)는 입점자가 별도로 구비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점 후 인테리어 공사 등의 사유로 소방점검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점자가 관련사항 일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계약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할 경우 관리단의 책임과 비용하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운용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과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벌금 등의 법적책임이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의 경우 각 점포별 입점시기가 다르므로 주방환기설비 등 기타 관리비 부과조건을 반드시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설계계획 상 이삿짐 운반은 등은 엘리베이터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고, 사다리차의 진입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및 배기휀으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재활용보관소)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철제난간으로 구분되어 설치되므로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어, 본 건축물 내 판매시설 쓰레기 처리장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지하주차장에 설치 예정인 바, 이용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수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기 및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 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 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동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및 지상 1층 바닥은 석재 마감, 벽은 석재 및 타일 마감, 기준층 바닥은 타일 마감, 벽은 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으로 시공되며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판매시설 외관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마감재,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 남측, 서측 대지경계 내에 공개공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 내 판매시설 쓰레기 처리장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며, 거리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점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점자 부담입니다.
-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차장 진입로는 1개소로 같이 사용하며, 판매시설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설치됩니다.
- 지하1층은 판매시설, 지하2층~지하6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주차장은 지하1층 판매시설 주차장을 경유해야하며, 지하1층과 지하2층은 차단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지하6층(기계실, 중수우수저류조, 지열교환실, 소화가스실 및 통로, 발전기실), 지하1층(계단실(#3) 및 복도, 제연휀룸, 관리사무소, 재활용보관소), 지상1층(MDF실, 방재실, 주경비실, 부경비실, 근로자휴게실)은 오피스텔과 공유하는 곳입니다.
- 판매시설 지붕 일부구간에 냉각탑, 탈취유닛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 점포에는 소음, 진동, 연무,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점포의 전면 공간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상가 계약자의 공용부분으로 상가 계약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에 면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점포의 소유자가 상행위에 따른 부속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시설(오피스텔) 입점인은 소음피해 또는 통행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판매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상기 유의사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제3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점 시기 조정 및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시설 입점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후 미입점 또는 입점세대 관리소홀로 인한 팬코일유닛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팬코일유닛을 기동할 수 있으며,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는「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시행 2020. 11. 12.]」제9조 내지 제11조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패드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변경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 내 엘리베이터에 면한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점포의 전기, 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므로, 이후 호실별 전기 용량증설 및 안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지관리단을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 상가의 시설물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및 각종 상가 홍보시설물의 유지, 보수로 발생되는 전기료,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과 기타 상가의 유지, 관리비용 일체는 실제입점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점지정기간 이후에는 계약자의 잔금완납 또는 입점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건축주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점포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위생배관, 가스배관, 전기시설 및 전기용량 증가,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및 간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평면 형태에 따라 채광창 설치가 제한되어 일부 세대 현관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및「건축법」제48조의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합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g	S_4	1.2	C	1	4

- 본 건축물에는,「건축법」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및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VII 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204(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측량성과도 및 택지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 폭 및 도로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상가 전, 후면부에 단지경계와 내부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 램프, 플랜터 등이 설치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전면부의 경우 보도로 계획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차량 통행 시 발생되는 바닥포장 파손 등의 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이를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블록 내 동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점자 임의로 휀스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점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및 시설물, 조경에 대해 시공상 경미한 설계변경, 인허가관청의 건축허가조건 및 요청 등에 대해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공상의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 후 진행됩니다.

■ 기타 주요 사항

-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건축주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이 경우 입점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는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소방성능위주설계심의, 구조안전심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 조건 등 포함]에 따라 본 건축물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본 건축물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점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점 후 주변 건축물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주변으로 대형 문화복합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남측으로 동탄순환대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측으로 호수공원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 본 단지 서측 1,000m 지점에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에 용지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시설,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본 건축물 내 판매시설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주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건축주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지상 및 지하에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하수처리장, 폐기물 집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의 계획이 변경되어, 입점 시기에는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점시기 조정 및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벽체는 준공 이후 시공되며 시공 기간은 2주(15일)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여 "을"은 계약 시 입점예정일을 협의한 후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갑"은 "을"과 협의한 입점예정일까지 벽체시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추후 "을"은 위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 및 구비서류 상 별도 명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관리신탁

- 본 오피스텔의 위탁자 대방산업개발(주)는 코리아신탁(주)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코리아신탁(주)가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방산업개발(주)는 상기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방산업개발(주)의 수분양자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을 코리아신탁(주)에게 양도함에 따라 공급대금은 코리아신탁(주)가 관리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본 분양목적물은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코리아신탁(주)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 또는 대리사무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코리아신탁(주)는 본 사업의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신탁사로서 대방산업개발(주)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 포함), 분양계약서 날인,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수행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리아신탁(주)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여 주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대방산업개발(주)의 수분양자에 대한 공급대금총액을 코리아신탁(주)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코리아신탁(주)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코리아신탁(주)가 공급대금총액을 양수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코리아신탁(주)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관리하고 있는 자금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본 계약과 분양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정산순서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공급대금을 환불하기로 합니다.

④ 코리아신탁(주)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⑤ 분양계약 해제 시 수분양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책임 등 분양계약상 일체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방산업개발(주)에게 있습니다.

⑥ 대방산업개발(주) 및 코리아신탁(주)의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무효로 합니다.

⑦ 대방산업개발(주)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코리아신탁(주)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계약자는 동의하고 확인합니다.
⑧ 분양계약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대방산업개발(주)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기 교부된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⑨ 본 조는 타조항에도 불구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존속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사업주체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1	건축2	구조	전기	소방	통신
사업주체명	㈜다보건축 건축사사무소	-	(주)한빛구조이엔지	㈜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감리금액	2,174,260,000	-	19,360,000	878,900,000		

■ 건축주, 시공업체, 자금관리신탁사의 명칭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건축주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 (마곡동 대방빌딩)	115911-0069601
시공사	대방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 (마곡동 대방빌딩)	115911-0069601
자금관리신탁사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110111-2937831
분양대행사	**없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항 제8호에 의거하여 작성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 광고의 내용은 참고자료로서, 지역 및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대방산업개발(주)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11층(마곡동 대방빌딩)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210110
- 사업방식 : 본 상업시설은 대방산업개발(주)가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분양 광고를 하였고, 분양 물건의 소유 및 사업 시행에 따른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첨자(입점예정자) 공급 계약을 대방산업개발(주) 단독명의로 체결할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5의3호에 따른 기재
  ①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송동 725-9,10,11번지 (동탄2 택지개발지구 일상10-1,2,3BL)
  ② 지목 : 대
  ③ 용도 : 판매시설

④ 규모 : 총 76실 (판매시설 76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지상 1층~지상 2층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540번지 (1688-3008)

■ **분양 홈페이지 :** http://www.elium-dt.co.kr/